

가

A P P R A I S A L R E P O R T

	(2026 155)
가	08-2606-2-0060

(가 가 , 가 (改作) · (轉載))



()

가

653, 3

: (062)366-5800 FAX : (062)365-5300

() 가

가	가	가
	가	()
()	가	()

가	(\184,001,700. -)		
		가 ()	(: 8)
()	(2026 155)	가	가
		가	-
		2026. 06. 09	2026. 06. 05 ~ 2026. 06. 09 2026.06.09

가	公簿()				가	
					가	
		1		1	-	109,001,700
	(가)	(1)	가	1	-	75,000,000
						\184,001,700. -

	가	가
	가	
		가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 대상물건 개요

1. 감정평가 목적

본 선박은 어선(동력선) "진희호" (FRP, 4.99 G/T)로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출을 위한 경매 목적의 감정평가건임.

2. 대상물건 현황

구분	선질	총톤수	주요치수(단위:m)			용도	어선번호
			길이	너비	깊이		
선체	FRP	4.99	11.50	3.34	0.84	어선	2007011-6467702

구분	종류	실마력	형식	제작소	제조일자	제조번호	비 고
기관	선박용 디젤엔진	545hp	-	Y&C ENGINE	-	-	-

구분	종류	비 고
의장품	사이드로라 외 4식	선박의장품 명세표 참조
어업허가권	연안자망어업, 새우조망어업	어업허가권 명세표 참조

3. 기준시점 결정 및 그 이유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2026년 06월 09일임.

4. 실지조사 실시기간 및 내용

대상물건에 대한 실지조사 실시기간은 2026년 06월 05일 ~ 2026년 06월 09일임.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기준가치 및 감정평가 조건

1. 기준가치 결정 및 그 이유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토지등(이하“대상물건”이라 한다)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인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하되, 감정평가목적에 고려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2. 감정평가 조건

의뢰인 측에서 제시한 특별한 감정평가의 조건은 없음.

3. 특이 및 유의사항

가. 본 선박의 내역(종류와 명칭, 선적항, 어선번호, 선질, 총톤수, 기관의 종류, 마력 및 대수, 추진기의 종류와 수, 진수년월일 등)은 귀 제시목록 및 어선원부 등에 의거하였음.

나. 본 선박은 전라남도 여수시 봉산동 소재 “국동어항단지” 내에 정박 중인 상태에서 실사하였음.

() 가

가	가	가
	가	()
()	가	()

가	(\184,001,700. -)		
		가 ()	(: 8)
()	(2026 155)	가	가
		가	-
		2026. 06. 09	2026. 06. 05 ~ 2026. 06. 09 2026.06.09

가	公簿()				가	
					가	
		1		1	-	109,001,700
	(가)	(1)	가	1	-	75,000,000
						\184,001,700. -

	가
가	
	가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I.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1. 감정평가 방법의 규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11조에 의하면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 ① 비용성에 기초하여,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서 감가수정을 하는 원가법
- ② 시장성에 기초하여, 대상물건과 동일·유사한 거래사례와 비교하는 거래사례비교법
- ③ 수익성에 기초하여, 대상물건의 장래 현금흐름 등을 할인·환원하는 수익환원법
- ④ 선박에 대한 평가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0조 제3항에 따라 선체, 기관, 의장별로 구분하여 평가하되, 각각 원가법을 주된 평가방법으로 규정하고 있음.

2. 대상물건에 적용한 주된 평가방법과 합리성 검토

- ① 본 감정평가에 있어서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과 감정평가 실무기준 및 일반이론에 의거하여, 동종 유사선박 선체 신조가격, 기관 및 의장품의 구조, 규격, 형식, 용량 및 현상 등을 참작하여 선체, 기관, 의장품별 **원가법**으로 평가하였음. (대상물건의 특성상 본건과 유사한 선박에 대한 거래사례의 포착이 힘들고, 대상물건의 특성상 수익 자료의 수집 및 적용이 곤란한바 거래사례비교법 및 수익환원법의 적용이 어려워 다른 평가방법에 의한 시산가액의 적정성 검토는 생략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3. 그 밖의 감정평가 관련 사항

가. 본건은 귀 제시목록상 어업허가에 관하여는 제시되어 있지 아니하나, 수산업법 제44조제1항은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을 그 어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상속받거나 매입 또는 임차한 자는 그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통상 어선 및 어업허가가 일체로 거래되거나, 어선 또는 어업허가만의 거래 또한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어업허가권은 별도의 물건으로 감정평가하여 “어업허가권 감정평가명세표”에 별도 기재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정상적인 지위승계 여부와 일괄 경매여부 등은 재확인하시기 바람.

나. 본 선박의 어업허가(연안자망어업, 새우조망어업)의 유효여부는 관할기관(고흥군청 수산정책과 수산정책팀)을 통해 확인하였으나 추후 별도의 재확인이 필요한 사항인 바, 경매진행시 재확인하시기 바람.

다. 본 선박에 설치된 의장품에 관하여는 제시되어 있지 아니하나, 현장조사를 통하여 내·외부 관찰에 의한 통상적인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하였으며, 선체와 분리하여 평가하기 곤란하거나 선체와 일체로 이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의장품은 별도의 물건으로 감정평가하여 “선박의장품 감정평가명세표”에 별도 기재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정상가동 여부와 일괄 경매여부 등은 재확인하시기 바람.

라. 본 선박은 한국해양안전교통공단 조회 결과 선체 및 기관의 검사증서유효기간이 도과한 것으로 조사되어 관찰감가법을 병용하였으며 추후 별도의 재확인이 필요한 사항인 바, 경매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4. 감정평가액 산출 과정

가. 선체가액 산출근거

(1) 재조달원가의 결정

(가) 선박신조단가 참고자료(선체)

(자료출처 : 선박감정평가, 한국감정원, 2010.12)

선종	구분	신조단가(G/T)	
		신통수기준(단위:만원)	
연안허가어선	연안자망어업, 새우조망어업	F.R.P(29G/T)	10,000 ~ 12,000
비 고	인근 조선소 탐문 결과 본건과 유사한 어선의 경우 기준시점 현재 20,000,000 ~ 26,000,000원/톤 정도에 건조 되고 있는 것으로 탐문 조사됨.		

(나) 동종 유사선박의 평가단가

기호	선박명	총톤수	선질	용도	진수일	재조달원가	기준 시점	평가 목적
1	동력선 대경호	4.99	FRP	어선	2015.11.27	25,000,000	2026.02.27	경매
2	동력선 세&강호	5.48	FRP	어선	2020.03.24	25,000,000	2026.03.30	경매

당해 선박과 유사한 선체 부분에 대한 평가 단가는 구체적인 선종, 조선소, 선주 추가옵션에 따라 다르나 어선의 경우 평균적으로 23,000,000원/t ~ 26,000,000원/t 내외로 평가되고 있음.

(다) 재조달원가의 결정

상기 자료 등을 기초로 당해 선박의 종류, 동종·유사선박의 신조가액 및 평가선례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하기와 같이 재조달원가를 결정함.

구 분	선질	총톤수 (G/T)	진수일	선체단가(원/t)
선체	FRP	4.99	2020.07.23	25,000,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2) 감가수정

감가수정이라 함은 대상물건에 대한 제조달원가를 감액하여야 할 요인이 있는 경우에 물리적 감가 및 기능적 감가 또는 경제적 감가 등을 고려하여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조달원가에서 공제하여 그 기준시점에 있어서의 대상물건의 가액을 적정화하는 작업을 말하며, 감가수정방법에는 내용년수법인 정액법, 정률법, 상환기금법과 관찰감가법이 있는바, 본건 선체의 경우 정률법(잔가율 10%)을 적용하되 한국해양안전교통공단 조회 결과 검사증서유효기간(2025.11.13. ~ 2025.11.13.)이 도과하여 관찰감가법을 병용하였음.

(3) 선체가액 결정

상기 제요인을 참작하여 하기와 같이 평가액을 결정하였음.

구 분	총톤수 (G/T)	선체단가(원/t)	잔가율	적용단가	결정가액	비고
선체	4.99	25,000,000	0.5012 (14/20)	12,530,000	62,524,700	관찰감가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나. 기관가액 산출근거

기관은 해상용기관과 육상용기관으로 구별하였으며, 실제 마력을 기준으로 하여 제작년월, 제작 회사, 규격, 형식, 성능, 동종 및 유사기관의 시가수준 등 제반 가격형성요인을 종합 참작하여 원가법으로 평가하되, 관리상태 등을 고려하여 감가수정을 하였음.

(1) 재조달원가의 결정

(가) 선박신조단가 참고자료(기관)참고자료

(자료출처 : 선박감정평가, 한국감정원, 2010.12)

실마력	형식	신조단가(kw당/원)		비고
주 기 관	Marine Diesel Engine	고속	170,000 ~ 370,000	-
		중,저속	300,000 ~ 530,000	
보조기관	Marine Diesel Engine	국산고속	120,000 ~ 200,000	-
		외산 중,저속	200,000 ~ 330,000	
비 고	주기관 및 보조기관은 국산품과 수입품의 가격차이가 크게 발생하고 있으며, 동종 모델이라도 사양 및 출력 등에 따라 가격편차가 크게 발생하는바 제조사 및 모델, 출력 등에 따라 별도 적용하여야함.			

(가) 재조달원가의 결정

상기 자료를 참작하되 시공상태 등을 종합 참작하여 하기와 같이 재조달원가를 결정함.

구 분	마력당 단가(원/HP)	실마력(HP)	수량	비 고
주기관	150,000	545	1	- 축계, 감속기 등 포함평가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2) 감가수정

감가수정이라 함은 대상물건에 대한 제조달원가를 감액하여야 할 요인이 있는 경우에 물리적 감가 및 기능적 감가 또는 경제적 감가 등을 고려하여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조달원가에서 공제하여 그 기준시점에 있어서의 대상물건의 가액을 적정화하는 작업을 말하며, 감가수정방법에는 내용년수법인 정액법, 정률법, 상환기금법과 관찰감가법이 있는바, 본건 기관의 경우 정률법(잔가율 10%)을 적용하되 현장조사시 검사기간이 도래한 것으로 조사되었는 바, 관찰감가법을 병용하였음.

(3) 기관가액 결정

상기 제요인을 참작하여 하기와 같이 평가액을 결정하였음.

구 분	실마력 (HP)	마력당 단가(원/HP)	잔가율	적용단가	결정가액	비 고
주기관	545	150,000	0.501 (14/20)	75,000	40,875,000	- 축계, 감속기 등 포함평가 - 관찰감가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V. 감정평가액 결정 및 결정 의견

가. 감정평가액 결정

구 분	총톤수, 실마력, 수량	단가 (원/t, 원/hp)	감정평가액(원)	비 고
선 체	4.99 T	12,530,000	62,524,700	- 목록 외(철제 및 전기시설 등) 선체포함평가 - 관찰감가
주기관	545 HP	75,000	40,875,000	- 축계, 감속기 등 포함평가 - 관찰감가
의장품	5식	-	5,602,000	- 선박의장품 명세표 참조
어업허가권	1식	-	75,000,000	- 어업허가권 명세표 참조
합 계			184,001,700	

나. 감정평가액 결정에 관한 의견

본건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거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하되, 동종 유사선박 선체 신조가격, 기관 및 의장품의 구조, 규격, 형식, 용량 및 현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음.

가

			2007011-6467702							
		가								
		가								
	4.99 G/T	12,530,000	62,524,700		25,000,000x0.5012(14/20)					
	545 HP	75,000	40,875,000		150,000x0.501(14/20)					
	- HP	-	-		-					
	5	-	5,602,000							
			\109,001,700		가 (: 10%, : 10%)					
	(,)	-	FRP	-	4.99 G/T	-	-	: 11.50 M : 3.34 M : 0.84 M		
	-	-	-	()	-	2020.07.23	-) (가 .			
	DIESEL ENGINE	545 HP	- HP	YC6K600L -C20	6 CYL	2,035 RPM	- m/m	- m/m	Y&C ENGINE	-
	- Knots	1		,			- : K704L30005 - 가			

가

	()	()		가		
				가		
1	- - Roll * 1ea -		2	1,082,000	2,164,000	2,000,000 x 0.541(11/15) 가
2	- - Roll * 2ea -		1	2,164,000	2,164,000	4,000,000 x 0.541(11/15) 가
3	V-PASS - Model : GMT-EYENAVI3.0 - S.N : DP20000834 -	() 2020.07	1	556,000	556,000	1,200,000 x 0.464(10/15)
4	- Model : 2000-ACU -	SUNG EUN	1	162,000	162,000	350,000 x 0.464(10/15)
5	VHF - Model : GX1700E - S.N : 20260131 -	2020.06	1	556,000	556,000	1,200,000 x 0.464(10/15)
			6		15,602,000.-	

가

1

		(㎡)		가		
				가		
1	[] 가 : 2024-00132 2024-00085 가 : 2024.01.01 ~ 2028.12.31	(1)	1	-	75,000,000	가
						\75,000,000.-

가

1.	3.	5.
2.	4.	
1. 선체의 현황 본 선박은 4.99G/T급 연안자망어업, 새우조망어업(진회호)으로 선체는 FRP 구조이고, 선수, 갑판, 기관실, 조타실, 선미 등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진수일자는 2020.07.23으로 지속적인 유지수선을 실시하여 제반 상태는 보통임. 2. 기관의 현황 본 선박의 주기관은 중국 Y&C ENGINE에서 제작한 디젤엔진 YC6K600L-C20모델이며, 2020년경 신품 거치된 주기관으로 감속기 및 축계장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관의 외형상 현상 및 관리상태는 양호하나 정상작동 여부 등은 재확인 필요함. (제조번호 : K7504L30005) 3. 의장품의 현황 본 선박에 설치된 의장품에 관하여는 제시되어 있지 아니하나, 현장조사를 통하여 내,외부 관찰에 의한 통상적인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하였으며, 선체와 분리하여 평가하기 곤란하거나 선체와 일체로 이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의장품은 별도의 물건으로 감정평가하여 “선박 의장품 감정평가명세표”에 별도 기재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정상가동 여부와 일괄 경매여부 등은 재확인하시기 바람. 4. 운항사항 본 선박은 연안자망어업, 새우조망어업 허가를 득한 어선임. 5. 기타 참고사항 1) 검사유효기간 : 2025.11.13 ~ 2025.11.13		

가

1.	3.	5.
2.	4.	
2) 허가 사항 - 허가종류 : 연안자망어업(고흥 연안자망어업 제2024-00132호), 새우조망어업(고흥 새우조망어업 제2024-00085호) - 허가기간 : 2024.01.01 ~ 2028.12.31 3) 본 선박은 전라남도 여수시 봉산동 소재 "국동어항단지" 내에 정박중인 상태에서 실사하였음. 4) 본건은 귀 제시목록상 어업허가에 관하여는 제시되어 있지 아니하나, 수산업법 제44조제1항은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을 그 어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상속받거나 매입 또는 임차한 자는 그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통상 어선 및 어업허가가 일체로 거래되거나, 어선 또는 어업허가만의 거래 또한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어업허가권은 별도의 물건으로 감정평가하여 “어업허가권 감정평가명세표”에 별도 기재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정상적인 지위승계 여부와 일괄 경매여부 등은 재확인하시기 바람. 5) 본 선박의 어업허가(연안자망어업, 새우조망어업)의 유효여부는 관할기관(고흥군청 수산정책과 수산정책팀)을 통해 확인하였으나 추후 별도의 재확인이 필요한 사항인 바, 경매 진행시 재확인하시기 바람. 6) 본 선박은 한국해양안전교통공단 조회 결과 선체 및 기관의 검사증서유효기간이 도과한 것으로 조사되어 관찰감가법을 병용하였으며 추후 별도의 재확인이 필요한 사항인 바, 경매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위 치 도





【 】



【 】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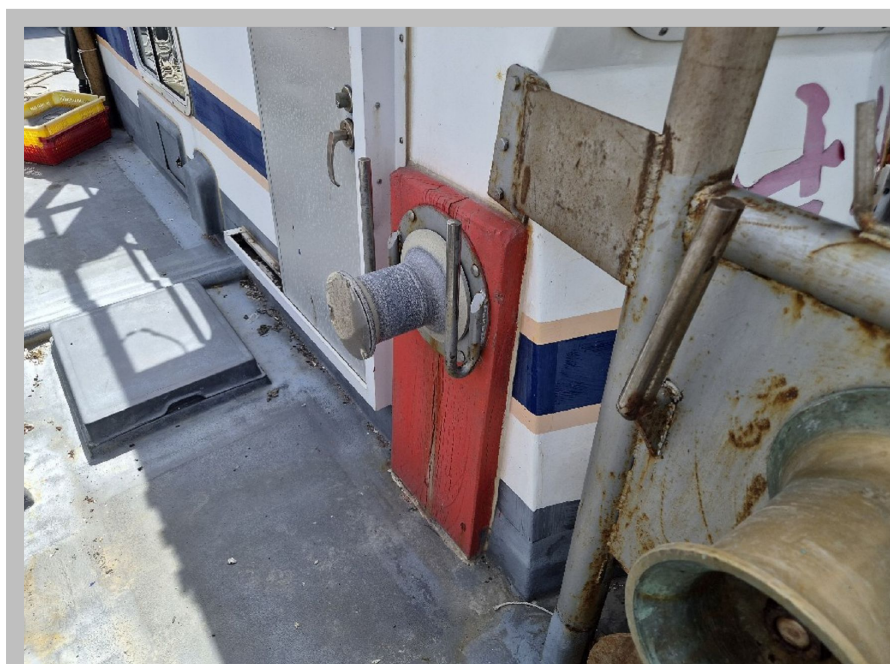
【 】



【 : , 】



【 : 】



【 (1) 】



【 (1) 】



【 (2) 】



【 (3) 】



【 (4) 】



【 (5) 】